# 2023 인천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통합공고

(재)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기업 육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2월 27일

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원장

# 1 사업개요

### □ 사업개요

O 지원내용 : 콘텐츠 제작지원

O 지원규모 : 총 1,610백만원, 총 15개 과제

구분	분야	지원자격	지원규모
초기단계	자유	<mark>공고일 기준, ① 창업 3년 이내</mark> 또는 ② 연 매출액 1.5억 미만인 인천 소재(본사) 콘텐츠기업 ※ 인천 외 기업 지원 불가	과제당 최대 70백만원 이내 (6개 과제 내외 선정)
성장단계	자유	<mark>공고일 기준, ① 창업 3년 이상</mark> 또는 ② 연 매출액 1.5억 이상인 <u>콘텐츠기업</u> ※ 인천 외 기업 지원 가능(선정 2개월 내 본사 이전 필수)	과제당 최대 90백만원 이내 (3개 과제 내외 선정)
성공단계	1차년도	공고일 기준, ① 창업 3년 이상, ② 콘텐츠 기확·제작 업종, ③ 자체제작 콘텐츠 상용화 실적(판매 또는 수출)을 보유한 기업이면서 선택조건(각 분야별 택일)을 2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고용유지 또는 투자실적 ② 콘텐츠 투자 실적 보유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매출실적 ②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를 보유한 법인 ※ 인천 외 기업 지원 가능 (선정 2개월 내 본사 이전 필수)	과제당 최대 160백만원 이내 (3개 과제 내외 선정)
	2차년도	1차년도 결과평가 최우수기업	과제당 최대 160백만원 이내 (1개 과제 선정)

※ 콘텐츠기업: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(정의)에 해당하는 산업 중 "만화(웹툰), 애니메이션, 캐릭터, 방송영상, 게임, 음악, 콘텐츠솔루션, 지식정보, 뉴콘텐츠 등"산업에 해 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(단, 순수예술, 영화, 광고, 출판, 산업디자인 제외)

- ※ 각 제작지원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, 결과물이 다른 콘텐츠에 한해 동시 신청 가능
- ※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개별 공고문 확인
- ※ 지원자격 내 '매출액'은 최근 또는 최근 3개년 결산년도 기준 재무제표 내 매출액으로 함

# 2 지원내용

## □ 사업별 세부내용

- 초기단계 콘텐츠 제작지원
  -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, <u>① 창업 3년 이내</u> 또는 <u>② 연 매출액 1.5억</u> 미만인 인천 소재(본사) 콘텐츠기업
  - 지워내용

지원내용	분야	선정규모	기본 지원금	인센티브
		과제당 70백만원 내외 유공모 6개 과제	과제당 10백만원 내외	
및	자유공모		의제6 70억단단 에의	※3개사
지원규모		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	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지원	

- 유의사항
  - 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하여야 함
  - 인천 외 기업은 지원 불가능함
  -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없음(주관기관 단독 지원)
-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지원
  -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, <u>① 창업 3년 이상</u> 또는 <u>② 연 매출액 1.5억</u> 이상인 콘텐츠기업
  - 지워내용

지원내용	분야	선정규모	기본 지원금	인센티브
			과제당 90백만원 내외	각각 20백만원, 10백만원
	및 지원규모	나유공모 3개 과제	파세영 30백인전 네되	※2개사, 차등지급
시원규모			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	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지원

- 유의사항
  - 선정 2개월 내 본사 이전 필수 조건에 한해 인천 외 기업 지원 가능
  -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없음(주관기관 단독 지원)
- 성공단계 콘텐츠 제작지원
  -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, ① 창업 3년 이상, ② 콘텐츠 기획·제작 업종, ③ 자체제작 콘텐츠 상용화 실적(판매 또는 수출)을 보유한 기업이면서 선택조건(각 분야별 택일)을 2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

- (선택1) 고용유지 또는 투자실적
  - ①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용인력 5명 이상 유지 중인 기업
  - ② 콘텐츠 투자 실적 보유 기업
- (선택2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매출실적
  - ①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3억원 이상
  - ②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를 보유한 법인
- 지원내용

	분야	선정규모	기본 지원금	인센티브
TIQUIIQ	자유공모	3개 과제	과제당 160백만원 내외	
지원내용	(1차년도)		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	과제당 10백만원 내외 <b>※분야 무관 2개사</b>
지원규모	지정공모	1개 과제	과제당 160백만원 내외	
	(2차년도)	1511 74/11	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조정	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지원
되저고ㅁ	분야	선정규모	주요내용	기본 지원금
지정공모 - 상세내용	2차년도	1개 과제	1차년도 최우수기업 대상 후속지원 (1차년도 아이템 고도화 지원)	과제당 160백만원 내외

- 유의사항
  - 선정 2개월 내 본사 이전 필수 조건에 한해 인천 외 기업 지원 가능
  - 선택조건은 각기 다른 분야의 선택조건을 각각 1개 이상 충족해야 함 (ex.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이면서 투자실적 보유한 기업으로만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)

# 2 지원비율

○ 지원비율 : 총 사업비의 90% 이내 지원(10%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)

총사업비	신청지원금 비율	기업자부담(현금) 비율	
100%(지원금+자부담)	총 사업비의 90% 이하	총 사업비의 10% 이상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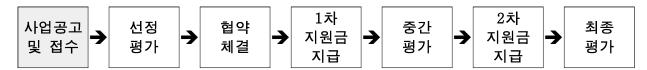
- ※ 총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산정하며,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 부담
- ※ 기업자부담(현금)으로 참여인력의 인건비 편성 및 집행 가능
- ※ 단, 신청지원금 및 기업자부담(현금) 비율 산정 시 중간평가 이후 결정되는 인센티브 지원 금액은 포함하지 않음

# ③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

분야	접수 사이트	접수기간		
초기단계	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 접수	공고일 ~ 2023. 3. 20.(월) 14:00까지		
성장단계	\	공고일 ~ 2023. 3. 27.(월) 18:00까지		
성공단계	비즈오케이(bizok.incheon.go.kr) 접수	2023. 3. 6.(월) ~ 2023. 4. 3.(월) 14:00까지		

- ※ 사업별 지원대상 및 접수 마감기한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 상세 공고내용 확인
- ※ 접수는 'e나라도움' 또는 '비즈오케이(Biz-OK)'를 가입하시어 이용하여야 하며, 접수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시스템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e나라도움 또는 비즈오케이 시스템 이외 온·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
- ※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며 반드시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
- ※ 접수기한 종료 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마감기한 엄수

# 4 추진절차



# 3 사업별 문의처

### □ 문의처

구분	분야	담당	연락처
	초기단계	(재)인천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지원센터 사업담당	032-876-5190
사업문의	성장단계 (재)인천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지원센터 사업담당		032-876-5075
	성공단계	(재)인천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지원센터 사업담당	032-876-5074
시스템	e나라도움	e나라도움 상담센터	1670-9595
시그램	비즈OK	비즈오케이 상담문의	070-8787-8286,7

- **※** 문의시간 : 평일 09:00 ~ 18:00(점심시간 12:00 ~ 13:00 및 공휴일 제외)
- ※ 시스템 사용 문의는 반드시 시스템 문의처로 문의
- ※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반드시 개별 공고문 확인
- 첨부 1. 2023 인천 초기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공고문 및 신청서식 각 1부.
  - 2. 2023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공고문 및 신청서식 각 1부.
  - 3. 2023 인천 성공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공고문 및 신청서식 각 1부. 끝.

##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2항

- 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 6. 10., 2011. 5. 25., 2014. 1. 28., 2016. 3. 29., 2020. 2. 11., 2020. 12. 8.>
- 1. "문화산업"이란 문화상품의 기획·개발·제작·생산·유통·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.
  - 가.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
  - 나.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
  - 다. 출판·인쇄·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
  - 라.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
  - 마.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
  - 바. 만화·캐릭터·애니메이션·에듀테인먼트·모바일문화콘텐츠·디자인 (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)·광고·공연·미술품·공예품과 관련된 산업
  - 사. 디지털문화콘텐츠,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·가공·개발·제작·생산·저장·검색·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
  - 아. 대중문화예술산업
  - 자.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, 조형물, 장식용품,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
  - 차.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. 다만,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제2호의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.
  - 카.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
- 2. "문화상품"이란 예술성·창의성·오락성·여가성·대중성(이하 "문화적 요소"라한다)이 체화(體化)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·무형의 재화(문화콘텐츠,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)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.

## 투자실적 인정범위

### □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

- 1.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
- ①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
- ②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
- ③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
- ④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
- ⑤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법률」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
- 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- ⑦ 투자실적, 경력,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
- 2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
-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
- ②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- ③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- ④ 「은행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
- ⑤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**경영참여형 사모집합** 투자기구(PEF)
- 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249조23에 따른 **창업·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** 모집합투자기구(PEF)
- 4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19조의2에 따른 액셀러레이터
- 5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9조27항과 동법 제117조10에 따라 온라인소액 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지분 증권에 투자하는 자
- 6.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제2항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외국투자회사
  - ※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투자실적 제외

#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제도 이용방법 안내

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<콘텐츠금융제도>를 운영합니다. 콘텐츠가치평가 연계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, 콘텐츠기업 융자 지원(▲콘텐츠기업보증, ▲콘텐츠IP보증, ▲K콘텐츠혁신성장보증, ▲문화산업 완성보증),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등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#### □ 콘텐츠금융제도

	구분	대상자격	내용	지원규모
콘	·텐츠가치평가	국내 콘텐츠기업	가치평가모형으로 콘텐츠를 평가, 투자사 추천을 통해 투자유치 지원	투자연계
콘	ㅁ뒨크데ㅎ		크데우 기취 제지 나이의 디게 드	(기획) 최대 3억원
텐	문화콘텐츠 기업보증	국내 콘텐츠기업	콘텐츠 기획·제작·사업화 단계 등 사업단계별 소요자금 지원	(제작) 최대 5억원
츠	기업포증		- 사업인계을 보호자리 시전 	(사업화) 최대 10억원
특 화	콘텐츠IP보증	국내 콘텐츠IP 활용기업 (콘텐츠기업 및 이종기업)	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IP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 지원	10억원 내외
보증	K콘텐츠 혁신성장보증		K콘텐츠혁신성장*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* 글로벌/비대면/신기술융합형 콘텐츠 제작 및 유통	최대 10억원
	문화산업	그비 코테ㅊ기어	유통사와 계약을 체결한	프로젝트별
	완성보증 국내 콘텐츠기업 완성보증		기업의 콘텐츠 제작자금 지원	15억원 내외
방	송영상진흥재원	독립제작사 및 케이블PP	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시설구축	프로젝트별
	융자지원	국립세국시 및 게이글[[	저리 융자지원	15억원 내외
콘턴	코테ᄎᆔ치플래포		투자유치를 위한 🏗교육, 피칭행사, 투자매칭 제공	투자연계

### □ 신청방법

- ㅇ 신청기간 : 2월 ~ 11월 \* 금융제도별 세부 신청기간은 해당 공고문 참고
- 사전신청 : 사전 신청서 작성(https://www.kocca.kr/cop/bbs/list/B0158960.do?menuNo=203897)
  - ▶ 이메일로 송부(assess@kocca.kr) ▶ 상담전화 통해 신청 안내
- 일반신청 : ①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www.kocca.kr) 알림마당
  - ▶ 금융지원 ▶ 해당 사업공고 내 신청서 등 다운로드 및 작성,
  - 2 콘텐츠가치평가센터 홈페이지(https://assess.kocca.kr) 기업 회원가
  - 입 후 제출서류 업로드(※ 신청 전 사전상담 필수)

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					TREPTO I ME CH	
고객센터	알림마당	사업안내	콘텐츠광장	콘텐츠지식	열린경영	진흥원소개
3174/01619161	지원사업	사업소개	게임	경기간행물	경영공시	진출원소개
때인제안	금융지원	구나선터	W-é-	영구보고서	祖紀初刊	안전보건당점
고건발합여	입합정보	해외센터	CH-62-62-93	산업통계	음식설명	是是基础
SECURIOR OF	and the state of t	1000000	B 80 70 5 90 FT	Anne Control Street	TRANSPORT	W 10 TO 10 T

### □ 문의방법

- o 콘텐츠가치평가센터 홈페이지 FAQ 및 1:1 문의 이용
- ㅇ 문의처 : 02-6441-3658, <u>assess@kocca.kr</u>

#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성평등센터BORA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교육 이용방법 안내

**콘텐츠성평등센터BORA**는 콘텐츠 및 방송 분야 내 건강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'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교육'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직장내 성희롱 예방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한 성평등 교육 무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#### □ 교육개요

ㅇ 교육방법 : 아래 방법 중 택1

구분	내용
현장교육	기업 현장으로 강사 파견하여 교육 진행
비대면교육	실시간회의플랫폼을 통한 원격 교육 진행
온라인교육	이러닝 학습을 통한 교육 진행

o 교육내용 : 콘텐츠 분야 맞춤형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

ㅇ 교육비용 : 무료

ㅇ 기타사항 : 교육종료 후 이수증 발급

#### □ 신청방법

ㅇ 신청기간 : 상시 접수 가능

ㅇ 신청방법 : 콘텐츠성평등센터BORA 홈페이지(<u>http://bora.kocca.kr</u>)

→ 교육신청





### □ 문의방법

- o 콘텐츠성평등센터BORA 홈페이지 Q&A 이용
- o 콘텐츠성평등센터BORA 대표번호 : 1670-5678(1번, 평일 10:00-17:00 운영)